

부산지방법원 2021. 9. 10 선고 2021나4433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1. 9. 10 선고 2021나44333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1. 2. 4 선고 2019가단335417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피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민석, 민예지

변론종결 2021. 8. 13.

판결선고 2021. 9. 10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. 2. 4. 선고 2019가단335417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청구취지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3. 8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2020. 10. 22.자 배당표에 의한 184,500,273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,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.

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홍준서, 판사 권현영, 판사 조윤정

별지